

농업관련 학술정보 상호이용 협정서

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과 대구대학교 도서관은 상호학술연구 목적을 위하여 양 기관의 소장자료를 소속기관 교직원,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제공, 봉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조와 같이 시행하기로 협정한다.

제1조(목적) 양 기관은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소장자료를 상호 이용함으로써 농업생명과학분야 학술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상업적 목적의 이용은 제한한다.

제2조(자료이용자격) 자료의 이용은 협정기관의 요청 및 협정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. 단, 신분확인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3조(자료이용) 자료의 대출, 문헌복사, 열람의 이용은 각 기관의 규정과 개관시간에 따르며, 자료의 대출은 단행본을 위주로 기관간 상호대차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속간행물의 대출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.

① 대출책수: 교직원, 연구원 5책14일

② 문헌복사: 문헌복사는 각 기관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, 우편, E-Mail, FAX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. 단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자료열람) 양 기관은 자료실내의 자료에 대해 열람 및 정보검색 편의를 제공한다.

제5조(전산망이용) 양 기관의 홈페이지를 개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문헌정보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이용자번호 발급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6조(목록발간) 양 기관은 소장자료의 종합목록 발간에 협력한다.

제7조(이용제한)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① 대출도서를 분실할 경우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상한다.
- ② 양 기관의 방침에 따라 일시 휴관 및 정관인 경우에는 상황 통보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.

제8조(협약) 양 기관 도서관은 본 협정서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- ① 본 협정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도서관 직원 중에서 실무간사 1인을 두며 이를 각 기관에 통보한다.
- ② 양 기관의 발전과 업무협조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간사회의를 개최하며,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.

제9조(관례) 이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- 1.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 관인날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.

2001. 8.

농 촌 진 흥 청



대 구 대 학 교 총

